

[변경 대비 표]

■ 변경 집합투자기구 및 변경 서류

펀드명	BNK튼튼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
변경서류	집합투자계약
변경사유	직판 클래스 신설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효력발생일	2022년 03월 18일

■ 변경대비표

항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직판 클래스 신설	① ~ ② (생략)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5. (생략) 16. ~ 18. <신설>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5. (현행과 동일) 16. Class J-e 수익증권: 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수익증권 17. Class J-Pe 수익증권: 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18. Class J-P2e 수익증권: 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제9조(수익권의 분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 ② (생략)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한다. ② (현행과 동일)
제10조(수익증권의 발)	직판 클래스 신설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

<p>행 및 전자등록)</p>	<p>설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p>	<p>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u>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u>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u>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u></p> <p>1. ~ 15. (생략) 16. ~ 18. <신설></p> <p>② ~ ⑤ (생략)</p>	<p>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u>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u>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u>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u></p> <p>1. ~ 15. (현행과 동일) 16. Class J-e 수익증권 17. Class J-Pe 수익증권 18. Class J-P2e 수익증권</p> <p>② ~ ⑤ (현행과 동일)</p>
<p>제14조(수익자명부)</p>	<p>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u>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u></p> <p>② 집합투자업자는 <u>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u></p> <p>③ (생략)</p> <p>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u>한국예탁결제원에</u>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u>한국예탁결제원은</u>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⑥ 제5항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u>예탁결제원은</u> 그 통</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u>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u>」 제2조 제6호에 따른 <u>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u>에 위탁하여야 한다.</p> <p>② 집합투자업자는 <u>전자등록기관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자등록기관은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u></p> <p>③ (현행과 동일)</p> <p>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u>전자등록기관에</u>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u>전자등록기관은</u>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p>1. ~ 2. (현행과 동일)</p> <p>⑥ 제5항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p>

		<p>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 ⑧ (생략)</p>	<p>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 ⑧ (현행과 동일)</p>
제16조(투자목적)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이 투자신탁은 전자단기사채 및 어음 등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이 투자신탁은 단기사채 및 어음 등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① 집합투자업자는 ----(생략)---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p> <p>1.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권, 전자단기사채등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를 포함하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p> <p>2. (생략)</p> <p>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p> <p>4. ~ 9. (생략)</p> <p>② ~ ③ (생략)</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생략)---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p> <p>1.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 등(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를 포함하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p> <p>2. (현행과 동일)</p> <p>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p> <p>4. ~ 9. (현행과 동일)</p> <p>② ~ ③ (현행과 동일)</p>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p>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p>	<p>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p>

	반영	<p>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p> <p>1. 전자단기사채 및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으로 한다.</p> <p>2. 채권(전자단기사채는 제외한다)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미만으로 한다. 다만, 채권 및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 60% 이상으로 한다.</p> <p>3. ~ 8. (생략)</p>	<p>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p> <p>1. 단기사채 및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으로 한다.</p> <p>2. 채권(단기사채는 제외한다)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미만으로 한다. 다만, 채권 및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 60% 이상으로 한다.</p> <p>3. ~ 8. (현행과 동일)</p>
제19조(운용 및 투자제한)		<p>집합투자업자는 --- (생략) ---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생략)</p> <p>2. 이 투자신탁 --- (생략) --- 투자할 수 있다.</p> <p>가. (생략)</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 (생략) ---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고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p> <p>--- (이하 생략) ---</p> <p>3. ~ 6. (생략)</p>	<p>집합투자업자는 --- (생략) ---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현행과 동일)</p> <p>2. 이 투자신탁 --- (생략) --- 투자할 수 있다.</p> <p>가. (현행과 동일)</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 (생략) ---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고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p> <p>--- (이하 현행과 동일) ---</p> <p>3. ~ 6. (현행과 동일)</p>
제23조(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① (생략)</p> <p>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의 따른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p>	<p>① (현행과 동일)</p> <p>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의 따른 요구를 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p>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③ ~ ⑤ (현행과 동일)
제25조(판매가격)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① ~ ② (생략) ③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u>제3영업일</u> 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30조 제2항을 준용한다)으로 한다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u>3영업일</u> 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30조 제2항을 준용한다)으로 한다.
제26조(환매업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① ~ ⑤ (생략) ⑥ 본 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u>제3영업일</u>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u>제4영업일</u>)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⑦ ~ ⑨ (생략)	① ~ ⑤ (현행과 동일) ⑥ 본 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u>3영업일</u>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u>4영업일</u>)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⑦ ~ ⑨ (현행과 동일)
제27조(환매가격)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u>제3영업일</u>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u>제4영업일</u>)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u>3영업일</u>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u>4영업일</u>)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30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u>대차대조표상</u> 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u>재무상태표상</u> 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p>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p> <p>② ~ ③ (생략)</p>	<p>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p> <p>② ~ ③ (현행과 동일)</p>
제32조(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p> <p>1. <u>대차대조표</u></p> <p>2. ~ 3. (생략)</p> <p>② ~ ④ (생략)</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p> <p>1. <u>재무상태표</u></p> <p>2. ~ 3. (현행과 동일)</p> <p>② ~ ④ (현행과 동일)</p>
제35조(상환금 등의 지급)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① ~ ② (생략)</p> <p>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u>한국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① ~ ② (현행과 동일)</p> <p>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u>전자등록기관</u>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제39조(보수)	직판 클래스 신설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① (생략)</p> <p>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u>대차대조표</u>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p> <p>1. ~ 3. (생략)</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 (생략)--- 금액으로 한다.</p> <p>1. ~ 15. (생략)</p> <p>16. ~ 18. <신설></p>	<p>① (현행과 동일)</p> <p>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u>재무상태표</u>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p> <p>1. ~ 3. (현행과 동일)</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 (생략)--- 금액으로 한다.</p> <p>1. ~ 15. (현행과 동일)</p> <p>16. <u>Class J-e 수익증권</u></p> <p>가. <u>집합투자업자보수율</u> : 연 1000분의 0.70</p> <p>나. <u>판매회사보수율</u> : 연 1000분의 0.10</p> <p>다. <u>신탁업자보수율</u> : 연 1000분의 0.15</p> <p>라. <u>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u> : 연 1000분의 0.10</p>

			<p>17. Class J-Pe 수익증권 가. <u>집합투자업자보수율</u> : 연 1000분의 0.70 나. <u>판매회사보수율</u> : 연 1000분의 0.10 다. <u>신탁업자보수율</u> : 연 1000분의 0.15 라. <u>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u> : 연 1000분의 0.10</p> <p>18. Class J-P2e 수익증권 가. <u>집합투자업자보수율</u> : 연 1000분의 0.70 나. <u>판매회사보수율</u> : 연 1000분의 0.10 다. <u>신탁업자보수율</u> : 연 1000분의 0.15 라. <u>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u> : 연 1000분의 0.10</p>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① ~ ③ (생략)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며, 동 규정에 의거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u>한국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p>	<p>① ~ ③ (현행과 동일)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며, 동 규정에 의거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u>전자등록기관</u>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p>
제49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① 집합투자업자는 ---(<u>생략</u>)---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 (<u>생략</u>) 2. <<u>신설</u>> 3. (<u>생략</u>) ② ~ ③ (<u>생략</u>)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u>법 시행령 제83조</u></p>	<p>① 집합투자업자는 ---(<u>생략</u>)---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 (<u>현행과 동일</u>) 2. 제38조에 따른 매수청구가 <u>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u> 3. (<u>현행과 동일</u>) ② ~ ③ (<u>현행과 동일</u>)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u>제17조제2항제1호</u></p>

		제1항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생략)	에서 정하는 단기대출은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현행과 동일)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①~⑥ (생략) ⑦ 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u>한국예탁결제원</u> 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u>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u>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 신탁업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u>한국예탁결제원</u> 을 통하여 <u>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u>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①~⑥ (현행과 동일) ⑦ 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u>전자등록기관</u> 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u>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u>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 신탁업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u>전자등록기관</u> 을 통하여 <u>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u>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52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직판 클래스 신설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 <u>수익증권저축약관</u> "(class C-P, C-Pe, 및 S-P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 <u>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u> ")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 <u>수익증권저축약관</u> "(class C-P, C-Pe, S-P 및 J-Pe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 <u>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u> ")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부칙 4>		<신설>	<부칙 4> (시행일) 이 투자신탁은 2022년 0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끝>